

精油產業 시설현대화와 石油事業基金

鄭 共 澤
 〈京仁에너지 業務課長〉

I. 石油事業法과 石油事業基金

1. 보호육성법으로서의 石油事業法

석유사업법은 그 입법목적에서 말해주는 바와 같이, 석유사업을 합리적으로 조성 육성하고 석유의 수급안정을 통해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에너지 생활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1986년 국내 총에너지 수요 60,748천 TOE중 석유의존도가 약 47%의 비중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石油의 부존자원이 현재로선 전무하여 전량 수입에 의존해야 하고, 해마다 갈수록 石油수요의 절대량은 점증하는 우리의 실정으로서는 수요관리도 중요하지만, 보다 큰 정책비중은 물량의 안정적인 공급확보에 두어야 함은 자명한 이치다.

따라서 안정적인 공급책을 강구함에 있어, 개괄적으로 봄서 대외적으로는 해외 석유자원의 자주적인 개발도입과 안정적인 공급선 확보책이 있고, 대내적으로는 경제적인 정제시설의 확보와 비축에 있다 할 수 있다.

여기서 정제시설의 확보란 국내수요량의 대종을 생산지 정제대신 소비지 정제주의의 기조하에서 原油를 도입 이를 국내 수요구조나 품질 / 규격에 맞도록 정제 / 생산 공급함을 의미한다.

이런 맥락에서 정부에 의한 석유산업의 보호육성의 핵심대상은 국내 정유산업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石油의 수급안정과 국민에너지 생활의 향상은 곧 국내 정유

산업의 전전한 보호육성이 전제됨을 내연적으로 함축하고 있다.

이런 취지에서 정부는 石油事業法 시행령 제16조 (기금의 용도) 3항 5호에서 석유사업기금을 정유시설 현대화 사업의 육성, 추진에 지원할 수 있도록 법령상의 뒷받침을 마련해 놓고 있는 것이다.

2. 基金의 특징과 정부의 基金관리 개선방안

1986년도 석유사업기금의 징수 예상액이 무려 1조5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동 기금중 상당액이 非에너지 부문으로 이체될 것으로 알려지는등 그 징수 및 활용의 규모나 통화안정 및 타산업부문으로부터의 지원 수요가 큰만큼 업계는 물론 전 국민적 관심사가 되었다.

그러면 본건의 구체적 접근에 앞서 우선 基金과 조세와의 차이내지 특질을 지극히 일반론적으로 한번 짚어보자.

- 조세는 국가 조세부과권에 의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징수하여 세출 등 재정수요에 지변한다.

그러나 基金은 특정수입으로 특정지출에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일종의 목적성 과정금이라 할 수 있다.

- 조세는 납세자 개개인에 대하여 유상적 반대 급부를 불요하나, 基金은 유상적 급부를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조세는 조세 법률주의에 따라 각종 재정법으로 세목과 세율이 규정되지만, 基金은 개별법에 의하며 각 주관부처에서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 조세는 재정정책을 포함한 전반적인 국가정책을 구체적으로 실현시키는 재원으로서 기능하지만, 基金은 민간관리, 국가관리등 그 특성상 특정의 유한한 사업범위내에서 준비성 기금, 투융자 재원의 회전기금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1985년말 현재 정부관리기금 25종, 민간기금 24종 도합 49개의 기금의 운용실태에 대하여 정부에서 이를 조사 검토한 결과,

- 基金조성의 방법이나 활용이 공공적 성격을 강하게 가지고 있고,

- 조성 및 운용규모가 너무도 크므로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고,

● 여유자금의 운용구조가 불안하여 통화운용의 교란소지가 있다는 등의 검토 결론에 따라 향후 각종 基金을 종래의 개별적, 자율적 운용에서 발전적으로 탈피하여, 통합관리체제로 제도적 전환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3. 石油事業基金의 목적 및 용도

- 石油事業法은 1977년 말에 석유사업법을 개정하면서 石油의 수급 및 가격안정과 석유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키 위하여 석유사업基金을 신설했다.

동자부고시 제82호로 당시 (1979. 7~12월 말) 기준 도입가인 배럴당 23.50달러에서 비축기금을 뺀 가격과 실도입 복합단가와의 차액을 전액 징수하는 것을 효시로 하여 지금까지 국내외 석유시장과 산업정책에 따라 수시가변적으로 운용되어 왔다.

1979년 10월 동제도의 신설이래 지난 5월 19일 석유사업법 시행령 개정때 까지는 동基金의 징수 및 운용을 각각 비축, 개발, 안정으로 3분하였으나, 대통령령 제11903(1986. 5. 19)에 의한 개정 시행령의 시행 이후부터는 용도의 구분을 통폐합하고, 그 용도에도 종전의 용도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에너지지원 개발사업이나, 여유기금의 국공채 매입, 재정자금에의 혜택 등에 활용할 것을 추가하였다.

- 1979. 10~1985. 12까지의 基金징수 실적 및 안정기금 활용

다음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7년간에 걸쳐 약 2조 1,925억원을 징수하여 각종 용도에 1조 7,600억원을 쓰고, 1985년말 현재 잔액 4,326억원이 1986년으로 넘어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1986년에는 基金의 징수 / 조성액이 1조 1,770억원(1986. 7 현재의 계획수치)에 달할 것을 예상하고 에너지부분 7,060억원, 잔여액 2천30억원은 산업체질강화 지원 등 정책지원용에 쓸 계획으로 있다(1986 수정 기금운용방안상 계수가 아님).

- 1986. 3. 28 현재 石油事業基金 징수율은 배럴당 50센트에 불과하였으나, 지난 3월 29일에 국제원유가 인하액 (4.55\$/Bbl) 중 배럴당 1.42달러를 추가하여 한꺼번에 징수율이 1.92달러로 인상 조정하고 그 이후 5월 31일에 9.04달러, 7월 4일에 11.29달러, 7월 29일에 11.

石油事業基金 조성 및 활용실적(1979. 10 - 1985. 12)

1986년도 基金징수 / 조성 및 활용계획(안)

(단위 : 십억원)		
A. 징수 / 조성액		2, 193
1979	—	110
1980	—	271
1981	—	514
1982	—	377
1983	—	421
1984	—	286
1985	—	214
소계	—	2, 193
B. 사용액		
가. 안정기금(1979-1985)		938
기준가차액보전	—	669
환차손차액보전	—	61
평준화차액보전	—	47
저가도입장려금	—	70
품질관리사무소지원	—	5
도입선다변화지원	—	86
소계	—	938
나. 비축 및 개발 (내용생략)		822
활용소계		1, 760
C. 1985년말 잔액(A-B)		433

(단위 : 십억원)	
1985 11월	433
1986 징수 / 조성	744
조성합계	1, 177
● 운용	706
- 석유비축사업	143
- 유전개발사업(융자)	19
- 油開公 운영비지원	12
- 도입선 다변화 및 품질검사 지원	31
- 에너지이용합리화(융자)	252
- 에너지공급시설(융자) (LNG 기지건설, 석탄개발 / 저탄, 도시가스 공급시설, 전원개발등)	249
소계	706
● 정책지원	203
- 산업체질강화기금	100
- 통화관리지원	53
- 지하철공사지원	50
소계	203

註 : 1986. 5-12월간 평균원유도입단가 \$15.00/Bbl
전체

90달러, 9월 5일에 13.78달러, 그리고 지난 10월 4일에 15.56달러로 계속 인상된 결과, 위에 언급한 것과 같이, 1986년 당초 징수/조성 예상액(1조1,766억원)을 훨씬 초과하여 약 1조5천억원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단, 원유 실행관세율 현행 25% 지속 전제)

그러나 정유사 입장에서 볼 때, 1986년도의 막대한 기본활용 규모에서 저탄자금, 도시가스배관, LNG 전원개발등 石油분야외의 여타 에너지 부문과 첨단산업 보호육성등 산업체질강화 등과 재정자금 특별회계로의 지원 / 이체를 실행했거나 또는 계획중에 있으면서도 정유업계의 수차례 결친 현대화시설 신설자금 지원용자 신청건을 정부가 동계획에 미반영함은 국가기간산업으로서의 정유산업 중요도나 비중을 격하시킨 소치로써 심히 유감스런 처사라 아니할 수 없다.

II. 国内精油產業의 시설현대화/고도화 를 위한 재원조달의 한계

1. 精油產業의 특성과 정책과제

(1) 精油產業의 특성

우리는 정유산업과 타산업과를 대비시 다음과 같은 특성을 일반적으로 거론할 수 있다.

- 자본 집약적 거대장치 산업이다.
- 저수익성 사업으로 자본의 회임기간이 상대적으로 길다.
- 국가기간 소재산업으로서 전후방 관련산업의 효과가 크고 공익성과 안보성이 크다.
- 원료(原油) 확보에 있어 경제외적 요인으로 資源내

서널리즘이 작용하여 수급상 국제적인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이 언제나 잠재하고 있다.

- 장기간의 설비 건설기간이 소요된다.
- 사업 / 경영주체의 자율적 경영합리화에 상대적으로 많은 제약과 한계가 있다.

(2) 위와 같은 특징을 가진 정유산업이 당면하고 있는 다음의 중요 정책과제는 정유업계 자체만에 전속된 과제라고 하기 보다는 오히려 국가산업정책 차원에서 볼 때 에너지수급안정을 위해 국민경제주체－누군가에 의하여 반드시 해결 / 완수되어야 할 필연적 과제이다.

— 지속적인 국민소득수준의 향상에 따른 에너지 수요의 고급화와 편의성 추구에 상응하는 석유제품의 고급화와 이를 공급기 위한 안정적인 기반시설 구축(重質油分 해시설, 탈황시설, 無鉛 휘발유시설, 가스공급시설)

— 경제규모의 양적 팽창에 따른 석유수요 절대량의 증가에 안정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부족 정제시설의 증설과 기존 노후설비의 개체내지 전환.

— 비축 및 송유관등 유통단계의 체질강화.

— 대체에너지 개발의 적극적인 참여 등으로 종합에너지 산업체로의 전환 / 개편모색.

(3) 이상의 과제중 정책적인 제일 우선과제는 주지와 같이 重質油분해 및 脫黃설비의 신증설임은 재론이 불요하다.

따라서 정유업계가 지난 9월 현재 동사업을 착수코자, 국내의 안정적인 석유류 수급에 1차적인 책임을 부담하고 있는 5개 정유사중, 4개사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소요자금은 대략 1조1천억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규시설 투자 소요자금

(단위 : M B/D, 억원)

정유사	油公	湖油	京仁	雙龍	極東	計
시설규모						
—탈황	20	—	30	—	—	50
—중질유 분해, 탈황	30	30	12	38	공사중	110
소요자금	3,083	2,700	2,480	2,790	공사중	11,053

(4) 精油社의 시설투자 소요자금 조달상의 문제점

업계가 당면한 정유산업 현대화 / 시설고도화 과제중 탈황 및 重質油 분해시설 신설 소요자금 약 1조1천억원을 조달함에 있어, 사업추진 주체로서의 정유업계가 자주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거액의 시설자금을 2년의 단기간내에 조달함에는 다음과 같은 精油社 의적요인에 의한 한계가 있다.

● 정부가 石油 고시가격 산정시 장래의 재투자 재원의 내부축적이 가능토록하는 요소 비용으로서의 적정이윤을 최소수준에도 미흡하게 반영하였으므로써 재무구조 전실화가 원천적으로 어렵게 되었다.

● 정유업계도 타산업과 마찬가지로 보유 유동성의 일부는 구속성 예금으로 금융기관에 예치되어야 함으로써 장부상의 유동성 계수와 실가용 재원과의 상당한 부족 괴리가 생기는 실정이다.

● 한국은행법, 은행법등에 의한 금융기관 여신운용 규정상 업종별 자기자본 지도비율에 의하여 은행여신의 제약을 받는다.

● 계열기업군에 대한 여신관리 시행세칙상 비록 특정 精油社 가 자체 재무구조상 여신운용 규정상의 저촉을 받지 않는 여건을 가졌다 하더라도 또다시 별도의 계열기업군 여신관리 규제로 인해 여신계약을 받는다.

● 뿐만 아니라 지난 8월21일부터 외화여 수신 규정제13조에 의거 거주자에 대한 외화대출한도 역시 지난 8월 20일 현재 외화대출잔액 범위내로 하되 동 잔액이 美貨 5백만달러에 미달할 경우에는 5백만달러 까지만 대출을 허용키로 축소 조정했다.

다만 예외규정으로 몇가지 경우는 한도규제를 완화했으나, 그것 역시 정유업계의 설비투자에는 적용되지 않고, 오직 수출업체 및 소재부품 생산업체의 시설재 수입자금으로 주거래은행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도록 되어있다.

또한 지난 8월 21일부터 제86-12차 외국환전문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종래 유전스 베이스에 의한 原油도입의 경우 수입보증금(L/C Margin Money)이 면제되었던 것을 1987. 1. 1 부터 실시키로 되었고,

● 아울러 재무부 통첩 의정 22248-388(86. 7. 9)에 의거 현행의 原油 연지급수입 허용기간 120일을 내년 1

월 1일부터 90일로 단축하는등 일련의 조치에 의하여 정유사의 유동성 부족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 지난 9월 21일 이전 국내 도착분 원유에 대하여는 원자재(原油) 도입후의 제조, 수송, 판매과정등 일정기간(61~76일)의 판매대전 회수기간에 앞서 原油도착과 동시에 基金을 선불해야 하는 자금상의 부담을 안고 있어 재무구조를 더욱 악화시켜 그로 인해 시중은행 및 산업은행으로부터 긴급운영자금조로 약 2,800억원의 차입이 불가피했다.

따라서 정유업계는 당면의 시설 신증설을 신속하고도 효율적으로 추진키 위해서는 막대한 내외자의 소요자금이 원활히 조달되어야 한다.

따라서 자금조달상 자주성과 임의성을 제약당한채 업계는 난감한 입장에 처해있다. 그러므로 업계의 최대의 자구적 노력과는 별도로, 정부의 정책적 지원/ 배려 없이는 정유산업 시설 현대화는 사실상 향후 많은 재원부족문제를 유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5) 정유업계가 국가기간 산업체로써 산업의 동력인 石油에너지의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언제나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이 잠재하고 있는 국제 石油시황에 신속적으로 대처하여 원유자원을 확보해야 하며, 대내적으로 위에 언급한 정책과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해야 하는등 많은 부담과 고통 및 사회적 책무를 안고 있다.

이와같은 정유산업의 애로에 대하여 현재 국가정책상 어떤 지원과 MERIT/DEMERIT가 있는지 그 제도상의 대강을 우선 짚고 넘어 가보자.

가. 내국 세제상의 지원제도

위에서 본 정유산업의 특성과 그 중요도를 감안하여 별도의 조세상 지원혜택은 사실상 전무하다. 다만 타업계와 대등한 처우에서 정유산업이 혜택을 입을 수 있는 조세상의 제도적 장치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그러나 이들 지원제도중 사실상 특별감기상각 손비용인 에너지절약과 공해방지산업에 대한 시설투자분의 손비용인 정도나 겨우 도움이 되고 있을 뿐이다.

精油產業에 대한 세제상 지원현황(내국세부문)

근 거 법 규	주 요 내 용	비 고
1. 조세 감면규제법 가. 기술 및 인력개발에 대한 조세 특례 * 조감법 제16조(기술개발준비금 설정)	- 수입금액의 1/100과 소득금액의 20 / 100에 상당하는 금액중 많은 금액을 설정할 수 있음.	준비금을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4년이 되는 연도에 환입
* 조감법 제17조(기술 및 인력개발에 대한 세액 공제)	- 기술 및 인력개발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의 10/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	
* 조감법 제18조(연구시험용 시설 및 직업훈련용 시설에 대한 투자 세액 공제)	- 다음중 택일. (1) 국산기자재에 대하여는 10/100 (외산기자재 8/100) 세액 공제 (2) 기자재 취득가액의 90/100에 상당하는 금액 일시상각	
나. 수출등 외화사업에 대한 조세 특례 * 조감법 제22조(수출손실 준비금)	- 외화수입금액의 1/100과 외화획득 사업 소득금액의 50/100에 상당하는 금액중 적은 금액의 범위안에서 손금 산입.	손금 산입 이후 2년이 되는 해세년도부터 3년간 균등히 환입.

근 거 법 규	주 요 내용	비 고
* 조감법 제23조(해외시장 개척준비금)	-외화수입금액의 1/100의 범위안에서 손금 산입.	손금산입 이후 2년이 되는 과세년도부터 3년간 균등히 환입.
* 조감법 제24조(가격변동준비금)	-수출용 재고자산 가액의 5/100를 손금 산입.	익년도 환입.
다. 해외투자에 대한 조세특례		
* 조감법 제29조(해외투자손실준비금)	-해외자원 개발을 위하여 투자한 금액의 20/100 손금산입.	손금산입 이후 3년이 되는 과세년도부터 4년간 균등환입.
* 조감법 제30조(해외자원개발투자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등 면제)	-자원보유국에서 내국법인의 배당소득에 대하여 조세를 면제받은 분에 한하여 법인세를 면제.	
라. 투자촉진을 위한 조세특례		
* 조감법 제71조(생산성향상을 위한 시설투자)	-다음중 택일. (1) 투자금액의 10/100(외산은 6/100) 세액공제 (2) 당해자산 취득가액의 50/100에 상당하는 금액 일시상각	
○에너지절약 시설투자 ○공해방지 시설투자 ○산업재해예방 시설투자	-사업용 기계장치에 한하여 투자한 경우 투자금액의 10/100(외산은 3/100) 세액공제. (1986년 12월 31일까지 투자분에 한하여)	
* 조감법 제72조(임시투자세액공제)		
마. 간접국세 면제등		
* 조감법 제73조(부가가치세 면제율 적용)	-국군조직법에 의해 설치된 부대 또는 기관에 공급하는 석유류.	
* 조감법 제74조(부가가치세 면제)	-수산업 협동유류(연근해어업용선박), 농기계용 유류. -한국해운조합 공급유류(연안운항여객선박). 수협중앙회 공급유류(도서지방의 자가발전용).	
* 조감법 제75조(특별소비세 면제)	-신제품 또는 신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시험·연구용의 견본품.	
* 조감법 제78조(특별소비세 면제)	-조감법 제73조 및 제74조 대상석유류. -한전 공급 Diesel.	
2. 법인세법		
* 법인세법 제10조의 3 (증자소득공제)	-증자액÷3×금융기관 대출이자율=공제금액. 증자년도부터 3년간 위 산식에 의한 공제금액을 납부할 법인세액에서 공제.	
* 법인세법 시행령 제51조 (특별상각)	-광업, 제조업 또는 전기, 가스업에 직접 사용되는 기계설비로서 재무부령	기계 및 장치시설에 한하여 특별상각 인정.

근 거 법 규	주 요 내 용	비 고
	이 정하는 것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특별상각 인정. (1) 연평균 매일 12시간 이상 15시간 미만 사용되는 것 : 일반감가상각 범위액의 20/100에 상당하는 금액. (2) 연평균 매일 15시간 이상 18시간 미만 사용되는 것 : 일반 감가상각 범위액의 30/100에 상당하는 금액. (3) 연평균 매일 18시간 이상 사용되는 것 : 일반 감가상각 범위액의 50/100에 상당하는 금액.	
3.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및 방위세법 제11조(관세, 방위세 환급)	수출, 미군납, 내외국적 병커링	
4. 기타 *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한 지원 지방세법 제110조의 3 지방세법 제128조의 2 지방세법 제184조의 2	취득세 면제 등록세 면제 재산세 면제	

나. 관세상의 감면제도

— 현행 관세법 부칙 제5조(관세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1 항의 석유정제업등 7 개 업종의 신/증설용 시설 기자재 도입물품에 대하여 당초 1985년 말까지 경과조치로써 40% 관세감면을 허용하였으나, 석유정제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다시 2년간의 연장을 허용하고 있다.

산업 및 용품	경감률(%)
○ 석유정제업—1983. 12. 31 전에 증설허가를 받은 분. 단, Cracker 시설은 1983. 12. 31 이전 신/증설 허가분	1987. 12. 31 까지 수입신고분에 대하여 40%
○ LPG 저장업	1986. 12. 31 까지 50% 1987. 12. 31 까지 40%

* CRACKER와 탈황시설 기자재의 관세감면을 위해서는 현행 관세법의 개정이 선행되어야 함.

— 기타 기술개발용품으로써 기업부설 연구소 및 산업

기술연구조합에서 도입하는 물품.

품 목 수	경 감 률(%)
RON 또는 Cetane 가 측정용기기 등 177 개 품목	실행 세율 20% 이하 물품—65% 실행 세율 20% 초과 물품—70%

(6) 日本의 石油 및 代替에너지 산업지원 대책

- 가. 석유산업 체질강화대책의 추진현황
지난 4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의 日本 예산연도중 재정자금에 의한 사업보조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 석유정제 합리화대책 사업비 보조
- 석유산업의 집약화와 설비고도화 추진
- 정제 관련 기술개발의 추진 등

한편 日本 정유업체는 오래전에 벌써 脫黃 및 重質油 분해 시설을 설치, 완료했을 뿐만 아니라, 대체에너지 개발 및 석유의존도 감축에 따라 현 68개사의 원유연속

日本의 정유산업 체질강화 대책(1986 회계년도)

내 용	금액(1백만엔)	비 고
○ 석유정제합리화 대책 사업비등 보조금 — 석유정제합리화 대책 사업비 보조금 ● 석유정제설비 폐기원활화 사업 ● 석유정제설비 폐기촉진등 이자보호사업 ● 저유소부지 이용계획책정등 조사사업보조(정책)	¥ 5,040MM ¥ 2,932MM 1,050 1,473 400 2,923	저유소폐쇄 및 설비이전폐쇄에 필요한 자금에 관하여 이자의 일부를 보조(3.5%~5.5%)
— 석유산업활성화 기술개발비등 보조금 ● 석유산업체질강화 기술개발사업	¥ 2,117MM 1,798	보조율: 2/3 (석유제품고도화 이용기술 개발) (미 이용자원 이용효율화 기술개발) (석유제품 고품질화 기술개발에 보조)
● 기술개발 기반정비사업	319 2,117	
○ 석유산업의 집약화와 서비스고도화의 추진 — 원매기업 집약화추진 2차설비도입의 촉진 — 일본 개발은행 이자보조 저리금융 5%	¥ 855MM	
○ 정제관련 기술개발의 추진 — 중질유대책 기술연구개발의 추진 ● 중질유 대책기술 실용화 개발사업 찬조금 ● 중질유 잔사물 유효이용기술개발비 보조금 ● 석유정제설비 고도화 대응 기술개발 보조금 — 경질유분 신용도기술개발의 추진—보조금 — 신연료유 기술연구 개발의 추진—보조금	¥ 9,128MM ¥ 4,958MM 4,346 374 238 4,958 ¥ 2,372MM ¥ 1,798MM	

〈자료〉 일본 통산성

증류시설능력 도합 4,973MB/D를 연차적으로 오히려 폐기 / 감축중에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석유산업 환경과 그대로 대입, 비교할 수는 없다.

다만 日本과는 달리 제반공정의 신 / 중설과 시설교체가 지속적으로 속행되어야 할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 日本의 정유업에 대한 지원조치는 모름지기 他山之石으로 삼아야 한다.

(7) 현행 油價구조와 정유사의 재무구조

업계 외부에서는 통상 국내 정유업은 경영상태가 지극

히 우수할 뿐만 아니라, 정부의 비호하에 땅짚고 해엄치기 장사를 하고 있다고 농반 진반의 힐난을 할 때가 종종 있다.

전문적, 구체적 요인의 분석과 타 산업과의 상대적 대비에 앞서 개연성적인 입장에서 정유업계의 실상과 어려움을 도외시하고 있는 경향이 많았다. 정유부문 연간 매출액이 6조 7천억원(1985)에 달하지만, 수익성이나 재무구조의 건실성 면에서 볼 때는 외화내빈이다.

● 1979년부터 1984년까지 6년간의 연평균 매출액이 익률이 마이너스 0.15%에 불과하여 같은 설비사업인 시

精油社의 경영분석

	1979	1980	1981	1982	1983	1984	연평균
실적순익(억 원)	15	— 575	— 246	529	15	122	23.3
유가반영이익(억 원)	189	189	189	220	229	229	207.5
자기자본(억 원)	894	944	1,382	2,569	2,806	3,049	1,940.7
매출액(억 원)	20,280	40,830	56,001	60,877	62,729	65,949	51,111
자기자본이익률(%)	1.7	—60.9	—17.8	20.6	0.5	4.0	—8.65
매출액이익률(%)	0.07	—1.41	—0.44	0.87	0.02	0.18	—0.15
자기자본지지도율(%)	9.8	4.9	6.6	11.6	13.2	23.7	11.6

멘트 제조업의 1.9%에 비하여 너무도 저조하고,
 ○ 또 동기간의 자기자본 이익률 역시 마이너스 8.65%
 로 정부의 관리가격 심사기준(1982. 9) 상의 허용 이익
 률 10%와는 현격하게 미급할 뿐만 아니라,
 ○ 자기자본 지도비율실적 또한 과거 6년간의 연평균
 11.6%에 불과하므로써 은행 여신관리 지침상의 정유업
 자기자본 지도비율 23.7% (1985. 4. 1~1986. 3. 31)
 에 불급하고, 1986. 4. 1 이후의 지도비율 19.5% 조차
 도 미달된다(하기 경영분석지표 참조).

위의 몇가지 예시지표에서와 같이, 석유가의 국가고시
 제도하에서 정유산업이 경영악화를 개선하지 못하는 것
 은, 정유업체가 결코 경영개선의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지
 않아서가 아니다.

정유업의 경영개선 요소중 업계가 자주적으로 할 수
 있는 Portion은 간접비 부문의 극히 미미한 비율에 불
 과하고 거의가 정유사 외적요인—즉, 국제유가동향, 환
 율, 정부의 油價관리시책에 의하여 좌우된다.

따라서 油價산정시 세후 10%의 적정이윤(자기자본이
 익률)이 반영되고 있다. 하지만 그것은 정유사의 자기자
 본 실세를 무시한 허울좋은 숫자의 성찬이다.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 정유업체의 경영악화의 원인은
 크게 대별한다면,

○ 정부가 油價 책정시에 반영한 특정시점 현재의 기준
 원유비가 사후에 인상/인하될 경우, 경험적으로 봐서
 국내油價 인하요인이 될지는 과감한 조기인하를 단행하
 고, 인상요인이 발생시는 최대한 지연시킴으로써 (Time
 Leads & Lags) 상당기간 경과후의 사후 정산반영으로
 정유업체는 언제나 제때의 손익 표기가 불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후 반영폭 역시 실세 반영이 아닌 경제외적

내지 정책적인 고려에 연유한 대부분 미흡한 수준이었
 다.

○ 정제비 즉, 대부분 고정비 성격인 간접비를 정부는
 표준원가 혹은 지도원가 개념이라는 미명으로 최소한의
 실비용조차 반영시켜 주기를 지극히 인색하고 있으며,

○ 자본비용으로 써의 적정이윤 계산시 공시적 성격을
 띤 자기자본 계수조차 실세반영에 거부적 입장을 보이거나,
 또는 반영시점의 최대한 지연을 피하여 왔으며,

○ 국가 고시 가격체제라 할지라도 수요자 과점 유종은
 대수요자의 우월적 지위와 이에대한 다수공급자(정유사)
 의 열위적 입장 때문에 고시가격에 훨씬 못드는 거래가
 격이 형성됨으로써 결손을 더욱 심화시킨 요인이 됐다.

이상에서 정유업체는 정유업체 외적 요인에 의하여 수
 익성의 누적적 악화와 재무구조의 구조적 취약성이 노출
 될 수 밖에 없는 그 필연성의 원인을 대충 더듬어 보았
 다.

국가기간산업으로써, 나아가서 안보적 측면에서 어떤
 타업종보다 우선적으로 국가의 건전한 보호를 받아야 할
 정유업이 도리어 평화산업 내지 소비재산업보다 그 재무
 구조가 허약토록 방관한다면 산업 정책상 결코 바람직하
 지 못하다.

III. 精油產業 시설현대화/고도화를 위한 基金의 우선적 지원 당위성

1. 石油에너지자원의 수요점증과 구조변화 및 소비지 정제주의 기조구축

국내 총에너지 수요중 석유의존도 자체는 代替에너지

개발, 에너지절약 등으로 그 비율이 47% (1986) 이하로 시현된다 하더라도 수요의 절대량 자체는 향후 6개년 계획기간중에는 4~6%로 꾸준히 증가될 것이며,

2. 국민石油에너지 생활역시 소득수준의 향상에 비례하여 고급화, 편의성 추구 추세로 가는 것은 자명하기 때문에,

3. 이에 부응하는 안정적인 공급을 담보기 위해서는, 반대되는 여러가지 혼란과 논쟁이 있을 수 있지만, 정유업계로서는 소비자 경제주의 기조에 의한 공급 원칙으로 국내에 탈황 및 중질유 분해시설 신증설이라는 당면 과제를 기어이 성취해야 할 입장에 있다.

4. 따라서 정유업계는 시설현대화를 위한 사업주체로써 자력에 의한 착실한 건설추진을 원칙으로 함에는 이론이 있을 수 있으나,

● 산업소재로써의 석유제품의 수급 및 가격이 전후방 관련효과를 고려하여 정부관리 가격 체제하에서 이윤의 내부축적이 너무도 빈약하도록 통제하여왔던 그간 정부의 油價정책을 감안하고,

● 업계 자체의 경영개선대상 wide가 지극히 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업계자체 경영전략의 수립 / 집행 역시 특성상 또는 주위 여건상 한계가 있다는 점.

● 현재 국가의 금융정책상 업계의 자구적 노력으로 외부차입을 아무리 시도하더라도 제도적으로 거액의 정유시설자금을 융자받을 수 없는 실정이고,

● 지금까지 정유업계가 납부해온 석유사업기금은 정유사가 제조 / 유통과정을 거쳐 기금납부 상당액을 조성 가능한 실점 월씬 이전에, 조기의 사전납부를 이행한 결과로 구조적인 유동성 부족을 더욱 악화시킨 요인으로 작용했던 점.

● 정유산업이 국가 기간산업이기 때문에, 일본역시 국가 재정정책으로 정유산업 체질강화를 위해 막대한 국고보조를 실행하고 있는 등 정책당국은 현안의 제반 여건과 제약을 감안하여, 정유산업의 시설현대화 소요자금 부족액을 목적성 기금인 석유사업 기금에서 우선적으로 지원(보조 또는 융자)함은 당연한 귀결이다. 또한 이는 석유사업법 시행령에 반영된 정유산업 시설현대화 지원취지와도 부합되는 소이이다. ◎

□고민해결 4단계작전 □

화나는가, 슬픈가, 조바심나는가 ?

걱정거리가 있으면 마음만 답답하지 만족할 만한 해결 방안은 찾기 힘들다. 이렇게 가슴만 타는 것은 벼룩이되고 귀중한 시간만 허비하게 만든다. 걱정거리를 풀지 못한 날 저녁은 짜증 나고, 조바심 나고, 좌절감을 느낀 것이다. 당신의 경우 어떻게 해결하는가? 심리학자들은 진실적인 자기성찰로 해결할 수 있다고 충고한다. 다음은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는 4 단계 방안이다.

① 먼저 문제를 어떻게 풀까 하는 생각은 일단 접어둔다. 그리고는 자신의 현재 감정상태를 직시한다. 화를 내고 있는가, 슬픈가, 겁이 나는가, 조바심이 나는가? 당신의 기분은 어떤가 알아보라.

② 당신의 기분을 자극한 원인은 어디서 비롯되었는지를 알아보자. 문제의 '무엇이 나를 불만족으로 유도했는가' 하고 반문해 보라. 불만은 변화를 필요로 할 때 나타

난다.

③ 기분을 자극한 타당한 이유는 밝혀냈는가? 당신에게 대처해야 될 일이 있을 때 가장 먼저 감정으로 나타난다.

④ 해결책을 찾는다. 문제는 꼭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라. 그리고 감정은 되도록 억제한다. 어쩌면 당신은 인간관계, 라이프 스타일, 작업환경에 변화가 초래되기를 바라고 있을 것이다. 해결방안이 생각나면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

이유를 정확히 찾아냈다면 불평을 하지 말고 당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살펴보라.

기분 나쁘다고 다른 사람에게 불평이나 하는 것은 결코 좋은 반응이 아니다. 그러면 일이 어떻게 변하겠는가?